등록번호	복지정책과-363
등록일자	2025. 1. 6.
결재일자	2025. 1. 6.
공개여부	비공개(5)

주무관		복지기획팀장	복지정책과장	생활복지국장
				전결 2025. 1. 6.
심경임		이재기	박상화	김신애
현	1			
조				





# 2025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계획

# 지급개요

- □ 지급대상: 1,730명(해운대구 거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)
- □ 지급금액
  - ► 6·25 참전유공자(220명): 월 210천원(시비 130천원, 구비 80천원)
  - ▶ 월남 참전유공자(1,510명): 월170천원(시비 130천원, 구비 40천원)
- □ 예 산 액: 3,510,000천원(시비 2,574,000천원 / 구비 936,000천원)
- □ **지급기간:** 2025년 1월 ~ 12월(매월 25일 지급)
  - ※ 전년도와 달라진 점
    - 6·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: 시비 30천원, 구비 20천원 증액
    -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: 시비 30천원, 구비 10천원 증액
  - ※ 기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: 1회 / 200천원(구비)



# 복지정책과

# 2025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계획

국가에 헌신·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2025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# 지급근거

- O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
- O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5조
- ○「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5조, 제6조

# 지급개요

### ① 지급대상
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지원대상) 및 「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지원대상)의 조건을 충족한 자
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

O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현황

구분	춛	함전유공자=	ШП	
<b>产</b> 世	계	6·25참전	월남참전	U) <u>1/</u>
대상자 수(명)	1,730	220	1,510	2024년 지급대상자 기준

### 2 지급금액

O 수당지급 (월 단위지급)

(단위: 천원)

구분 대상자			지급액		<b>비고</b>		
十七	υσχι	계	시비	구비	ni 17		
6•25참전	220명	210	130	80	24년: 시비 100천원, 구비 60천원 지급		
월남참전	1,510명	170	130	40	24년: 시비 100천원, 구비 30천원 지급		

#### O 소요예산

► 시비: 2,574,000천원(130천원×1,650명×12개월)

☞ 2025년 부산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 내시(안) 기준

▶ 구비: 6·25참전-211,200천원(80천원× 220명×12개월) 월남참전-724,800천원(40천원×1,510명×12개월)

### O 수당 지급현황

► YI HI

구분	2012년	2013~ 2014년	2015년	2016~ 2017년	2018년	2020~ 2024년	2025년
금액	20천원	30천원	40천원	50천원	80천원	100천원	130천원

#### ▶ 구비

구분	6·25참전						•	월남참전		
TE	2018년	2019~ 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3년	2024년	2025년
금액	10천원	20천원	50천원	50천원	50천원	60천원	80천원	20천원	30천원	40천원

### ③ 기타 지원

### O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
① 지급대상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

② 지급금액: 200천원 / 1회

③ 지급시기: 사망위로금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

※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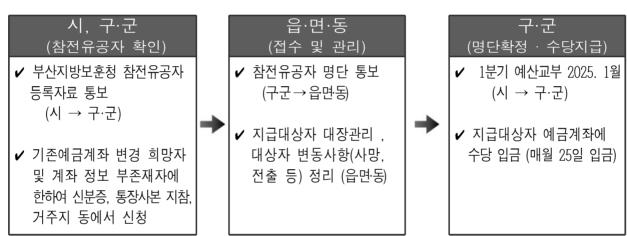
④ 소요예산: 24,000천원(200천원×10명×12월 / 구비)

### 세부추진계획

### 11 대상자 확정

Ш

- O 보훈수당 지급업무시스템(새올연계) 이용 및 대상자 명부제공
  - ▶ 매월 10일까지(市→區)
    - ① 제공받은 참전유공자 명부를 전달 명단과 상호대사
    - ② 주민등록 조회하여 1차 자격 확인
    - ③ 신규신청 및 전입자의 경우 보훈청에 적격여부(제외대상자) 확인
  - ▶ 명부 확정 : 매월 20일까지(區)
- O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



### ② 지급방법

- O 지 급 일: 매월 25일(단,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)
- 지 급 액: 월남 참전유공자 ☞ 월 170천원(시비130천원, 구비40천원)

6.25 참전유공자 ☞ 월 210천원(시비130천원, 구비80천원)

► 지급방법: 개인별 거래은행 통장으로 본인·계좌 입금원칙\*

#### \* 대리수령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함

- ❶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 ❷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채권 압류 시
-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- ④ 그 밖에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(군수)가 인정하는 경우
  - ▷ 대리수령인 : 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 방계혈족
  - ▷ 대리수령 신청서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, 계좌입금 원칙
- \*\* 지급대상자의 본인계좌불가 및 대리수령인도 없는 경우 현금지급 가능
  - ▷ 현금 지급 시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【붙임7】 교부

- O 지급중단: 사망, 전출, 부적격 통보 시
- O 환수조치
- ►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 되거나 발견된 때
- ▶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
  - ※ 공법상 채권소멸시효는 5년임(지방재정법 제82조)

### ③ 대상자별 수당지급 세부기준

구 분	참고사항	비고
신규대상자	보훈청에 등록 <u>신청한 달</u> 부터 지급	
사망자*	<u>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</u> 은 전액 지급	
탈락자	보훈청(시)에서 탈락자 <b>통보된 달</b> 부터 미지급	
전출자 (구·군, 타시도)	1일이라도 거주한 <u>전출지에서</u> 지급 예) A구 → B구(타시도) 전출자(전출일 2025.1.2.) 2025.1월분 수당은 <b>A구</b> 에서 지급	매월 15일한 전입지 통보
전입자** (구·군, 타시도)	전입일 익월부터 지급 예) A구(타시도) → B구 전입자(전입일 2025.1.2) 2025.2월분 수당부터 B구에서 지급 단, 매월 1일 전입자는 전입 구에서 당월부터 지급	
기초생활수급자 (참전유공자)	참전명예수당은 소득액으로 미산정 ※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	개정조례 적용 (2019.1.1.)

- \* 사망자의 계좌정지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는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
- \*\* 전입자 및 신규대상자의 경우 명단 통보가 늦은 경우 소급지급 가능

# ₩ 행정사항

### ① 복지정책과

- O 참전명예수당 지급계획 유관부서 및 동 주민센터 알림 : 1월 초
- 전출자 명단 송부 : 매월 15일까지
- O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: 매월 20일
- O 수당 지급대상자 예금계좌(본인) 입금 조치 : 매월 25일

### [2] 동 주민센터

- 타 시·도 전입자 수당 신청서 접수 및 통보(동→복지정책과)
- O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신청서 접수 및 통보
- O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및 통보

#### 붙임 1.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

- 2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
- 3.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1부
- 4. 참전명예수당(수당포기.수령회복) 신청서 1부
- 5.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신청서 1부
- 6.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1부
- 7. 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 1부
- 8.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
- 9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1부
- 10.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1부
- 11.「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1부. 끝.

### 【붙임 1】

참전등	록번호												
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													
참 전	성 명						주두	민등록번	호			-	
유공자	주 소								(2	전화변	<u> </u> 호:		)
지급	금융기관	난명						예금주	성명				
계좌	계좌번	호											
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			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시청이 계츠되르	1.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.	수수료
신청인 제출서류	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	없 음
공동이용행정정보 (담당공무원 확인사항)	1. 주민등록 등본	
(담당공무원 확인사항)	1. 구천중국 중단 	
·	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 정부법」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)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

#### 【붙임 2】

###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
- 1.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계좌변경●수령포기(회복)●대리수령 신청서
- 2. 수집 · 이용 · 제공하는 개인정보

정보의 범위 및 항목	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
주민등록정보(등·초본)	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	한식사성 확한 옷 사석 소사

■ 위	사무	처리와	관련히	-d
-----	----	-----	-----	----

(개인정보 이용·제공 알림) 위 동의 사항에 대해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제2항 및 제18
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	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

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

 처리함에
 □ 동의함
 □ 동의하지 않음

#### 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.

※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·수집 및 제공,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,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위 동의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

### 【붙임 3】

#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

* [ ] M L M 9.6	기도 첫에 자꾸지고 합의다.								
	보훈번호	성명							
신청인	주민등록번호	전화번호							
	주소								
	변경구분 [ ] 예금계좌 변경 [	] 현금지급으로 변경							
	[ ] 계좌입금으로 변경								
변경 내용	금 융 기 관 계좌번호 명								
	변경지급 희망시기 <b>20 년 월</b>								
	녂시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├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합니다.	규정에 따라 지급하는							
	신청인	20 년 월 일 ( <b>서명 또는 인</b> )							
부산광역시	해운대구청장 귀하								
첨부서류	신분증 사본 1부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통	<sup>수수료</sup> 다) 사본(예금계좌를 <sub>없음</sub>							

## 【붙임 4】

# 참전명예수당 (수령포기·수령회복) 신청서

보진	한번호									
えしス	임명세스	다 /스러고	7] .	<b>스</b> 卍	당)	片ノソ	コシル	1	처리기점	<u>'</u> }
참전명예수당 (수령포기 · 수령회복)신청서								<b>'</b> ]	3일	
신	성 명			주민	등록	·번호				
천 인	현주소					(전호	<del>-</del> 나번호			)
예금	예금주	은행명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적-	용기간	
계좌							당월	.의 :	15일 기준	
《수영·	포기 및 수	·령회복 사유 -	반드	시 자필	<u></u>	재 할	것》			
	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(수령포기·수령회복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
부	산광역시	해운대구청장	· 귀ㅎ	<b></b>			(*	1 0	또는 인)	
구비	서류 1. 계	좌번호가 기재	된 통	장사본	- 1 <sup>1</sup>	부			수수료 없 음	

## 【붙임 5】

# 참전명예수당 대리수령 신청서

제 호					처리기간
	참전명여	수당 대리수	령 신청	서	3일
	성 명		생년월일		
	0 0		(성별)		
지급	주 소			전화번호	
. –		□ 원자리가 ㅠ! 그리가	지그리 비스 거	휴대전화	
대상자		□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			
(신청인)	신청사유	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	. – – . – . –	– • .	
	20111	□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	족부장관이 정하	는 거동불가의	의 사유로 인하여
		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			
	대리수령기간	년 월부터 년		월간)	
※ 아래 법정대리		가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		경우에만 기	재
법정	성명		주민등록번호	rl 등l ul ÷	
대리인	주 소			전화번호 휴대전화	
" 1 "	 성명		주민등록번호	쥬네인의	
대 리	지급대상자		전화번호		
수령인	와의 관계		휴대전화		
Tou	주 소				
지급계좌	금융기관		계좌번호		
		지원에 관한 조례』제5조	에 의거 지급되는	는 참전명예수	당을 위와
같이 대리수령 	의 승인을 신청합	합니다.			14 01 01
	<u>ال</u>	청인(법정대리인)	( ) [	명 또는 인)	년 월 일
		리 수 령 인		g 또는 인) 명 또는 인)	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니 구 등 년 운대구청장(동장)	(^) 귀:		
 구비서류 :	٥١١	<u> 군네구~ö~ö(ō~ö/</u>	TI	<u> </u>	수수료
1 ' ' ' '	민적사항을 확인 <u>할</u>	함 수 있는 서류			一十十五
		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-	수 있는 서류 1 <sup>1</sup>	부.	
		선고를 받은 사실			
		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			없음
		당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		lo alolal k	
3. 내리수덩인 있는 서류	의 신경작의 배국	우자, 직계혈족 또는 3촌이	네의 방계열쪽임	급글 확인일 수	÷
	민적사항을 확인형	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	신청하는 경우에	만 제출합니	다)

제 호		참 <sup>;</sup>	전명예수당 대리	]수령 승 <sup>(</sup>	인서		
지급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			
대상자 (신청인)	신청 사유		대리수령 지정기간	년	월부터	년 월까지(	월간)
대리 수령인	성명		주민등록 번호			신청인 과의관계	의
구당인	주소						
위와 같이 대리	]수령을	승인합니다.					
					년	월 일	
		해운대구청장(	동장)	직인			

### 【붙임 6】

#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

여		참전명예수당대상자				수당지급계좌			자격여부				비고
연 번	보훈번호	성명	주민 <del>등록</del> 번호	민등록번호 우편	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6.25/ 월남전	지급월	사유	연락처	비고 (이사,자격상실,사 망 등)
	1111029144	김○○	300	12345	부산 연제구대로	우리					전입자		빨강색으로 기재
											신규자		

### 【붙임 7】

# 참전명예수당 현금수령증

보관용	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									
수령자	성 명	전화번호								
인적사항	주 소									
수령일자 및 수령액	급여 내용	참전명예수당								
및 수령액	수령일자	20	수령액	(원)						
보이으 사기 =	근여른 사기와 간	이 처그 수려하여	]으으 화이하니디							

수 령 자: (서명 또는 인)

### 절취선

교부용	참전명예수당 현금 수령증								
수령자	성 명		전화번호						
인적사항	주 소								
수령일자 및 수령액	급여 내용	참전명예수당							
	수령일자	20	수령액	(원)					

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수 령 자: (서명 또는 인)

### 【붙임 8】

# 미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일	!
	대상구분			보훈번호		
	성명			생년월일		
참전명예수당을				(성별)	(	)
지급받던 사람	주소			'		
	(전화번호)			(전화번호 :		)
	구분	[	] 사망	신상변동일		
	성명			주민등록번호	_	
	주소					
시키이	(전화번호)			(전화번호 :		)
신청인	관계			참전명예수당	년	월부터
				미지급기간	년	월까지
	거래은행명			계좌번호		

「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**신청인** (서명 또는 인)

####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(동장) 귀하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
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- 구비서류 1.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
	수수료 없음

## 【붙임 9】

참전등	록번호								
	저 스	ュファ	l al	망위	2.7	지그	 	청서	처리기간
TÜ	<b>থ</b> স	o /	ነ <b>ና /ነ</b> [ 	777	ᅩㅁ	一 日	~ご 	~\\ 	10일
	성	명			생년	1월일			
참 전	주	소							
	사망일	실자							
	성	명			생년	1월일			
신청인	주	소						<b>(2</b> )	)
	참전유 와의 <sup>3</sup>					급기관 급계좌)			
Γ <u>J</u>	부산광역	취 ㅎ	내운대-	구 참전	유공자	예우	및 지	원에	관한 조례」
제5조	제1항어	] 의견	귀 위외	같이	신청합	니다.			
					년	월		일	
			신청	인			(서도	명 또는	는 인)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									
※ 구비	서류								수수료
2. 참	망 및 / ·전 유경 ·장사본	공자증	•	웨를 확인 1부	<u>민</u> 할 수	있는 /	서류 1 	[부 	없 음

#### 【붙임 10】

###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부산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 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  - 3.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  - 4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, 지급절차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【붙임 11】

##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일부개정) 2022.12.13 조례 제1589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 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1.7.22., 2022.12.13.>
- 제4조(지원사업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(이하 "구청장"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 - 2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2.>
  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, 지급절차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1.7.22.>
- 제6조(사망위로금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
  -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부 칙<제1589호, 2022.12.13.>
-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